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이재도 의원 외 27명)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이재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2
----------	-----

발의연월일 : 2020. 8. 14.

발 의 자 : 이재도 · 박태춘 · 정세현
김수문 · 김희수 · 나기보
홍정근 · 황병직 · 박현국
김대일 · 도기욱 · 박판수
김성진 · 박창석 · 한창화
박정현 · 박승직 · 김상현
김진욱 · 윤창욱 · 정영길
박영환 · 남진복 · 배진석
곽경호 · 최병준 · 박용선
고우현 의원(28명)

1. 제정이유

- 학생들이 푸른 자연 공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학교숲에 대한 중요성과 교육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경상북도 내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숲”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학교숲 조성과 관련한 도내 학교 용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숲 등의 실태 조사(안 제5조)
- 라.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 마.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5. 관련부서 협의

- 가. 법제심사 : 의견 없음
- 나.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마.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 없음
- 바. 비용추계서 : 붙임

6. 발의의원 서명부 : 붙임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학습공간 제공과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숲을 말한다.
2. “학교숲 조성”이란 학교숲에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
 - 나. 의자, 간이쉼터, 숲 안내판, 식물 이름표 등의 설치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숲 구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구축
3. 적합한 식재 수종 선정에 관한 사항
4. 학교숲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경상북도 학교 용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숲 또는 산지의 수목식생에 관련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통해 대일항쟁기를 비롯하여 과거 식재된 유해수목을 제거하고 제6조의 학교숲 조성 기준에 맞추어 새롭게 조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 주변환경 및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조성
3. 접근성 및 지역협력 확대 :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성 강화 :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을 포함한다)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6. 안전성 확보 : 학교숲을 이용한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농약 및 제초제 등 살포금지

제7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숲의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수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학교숲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의 계획 및 방향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업무 국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숲 조성 또는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시·군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사대지(校舍垔地)·체육장 및 실습지
 -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와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10. “산림복원”이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련부서 협의

1 법제심사 (행정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창의인재과)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담당자	교육행정7급 최상순
입안주무부서	창의인재과	통 보 (조 치) 일	2020. 6. 16.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중 특혜발생 및 부패 유발요인이 있는 조항	평가항목별,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결과 ‘원안 동의’ 의결함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학생생활과)

- 해당 사항 없음

5 해당부서 검토의견 (해당부서)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창의인재과		해당 없음
시설과		해당 없음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수반요인(관련조문)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격기준 : 3년생 유실수 기준 1주당 20,000원 기준, 학교숲 내 학생, 교원, 지역주민 등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 및 의자, 숲 안내판, 식물 이름표 등 10,000,000원 기준
- 비용추계 기간 : 2021년 ~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연도별 40개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교숲 조성 사업 추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 연 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출	○학교숲조성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소계(a)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세입	○학교숲조성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소계(b)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총 비용(a-b)		0	0	0	0	0	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40개교 × 50,000천원 × 5년도 = 10,000,000천원
- 세부내역
 - －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 구입 : 8종 × 250주 × 20,000원
 - － 학교숲 내 의자, 간이쉼터, 숲 안내판, 식물 이름표 등 구입 : 5종 × 2,000,000원

5.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 10,000,000천원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 연 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합 계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3) 협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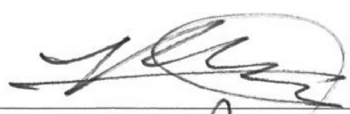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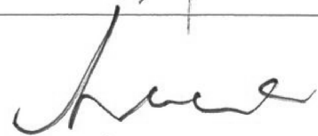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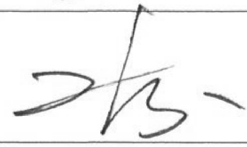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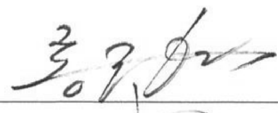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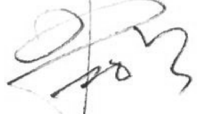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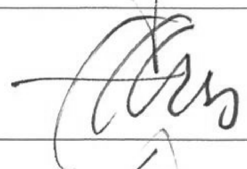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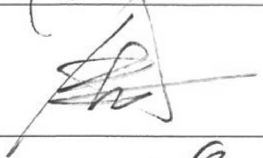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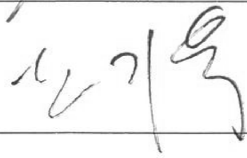
- － 해당없음

6. 작성자(참여자)

-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김주현(054-805-3408)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이 재 드		
박 새철		
정 세 현		
김 수 문		
김 환 수		
나 기 보		
홍 광 근		
황 병 직		
박 현 국		
김 대 일		
신 기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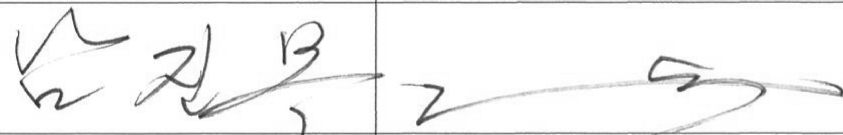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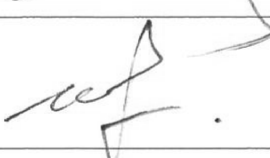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박판수	박판수	
김상진	김상진	
최창식	최창식	
한재형	한재형	
박정현	박정현	
이동진	이동진	
김상현	김상현	
김진욱	김진욱	
이창호	이창호	
정영길	정영길	
박영환	박영환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김진복		
김진석		
박정호		
최병권		
박영진		
고우진		